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전체 공익신고 기관을 통한 보호·지원 신청 허용 등〉

■ 조계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128호)

2026. 3.

정 무 위 원 회

전 문 위 원 김 정 연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공익신고 및 공익신고자 보호·지원 제도 개관	3
2. 전체 공익신고 기관을 통한 보호·지원 신청 허용	16
3. 공익신고로 인한 공공기관 수입 회복 등의 사실을 권익위에 통보 ..	28
※ 참고자료	3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조계원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6. 1. 19.
3. 회 부 일 : 2026. 1. 2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신고자가 법적인 보호와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수사기관 등 조사기관에 공익신고를 하는 것과는 별도로,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나 보상금 지급을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이중 절차’ 구조를 취하고 있음. 이러한 구조는 신고자에게 과도한 절차적 부담을 지울 뿐만 아니라, 별도 신청 과정에서 신원 노출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신고자가 정당한 보호·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는 원인이 되고 있음.

보상금의 경우 공익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이 발생해야 신청할 수 있으나, 신고자가 내부 정보인 수입 회복 사실을 알기 어려워 보상 신청 자체를 못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익신고 접수기관이 신고 접수 단계에서 보호·보상 신청 의사를 확인하여 국민권익위원회로 이첩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 사실을 신고자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신고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조사기관 등은 공익신고를 접수할 때 신고자에게 보호·보상 제도 및 신청 절차를 안내하고, 신고자가 보호·보상 신청을 원하는 경우 이를 접수하여 즉시 국민권익위원회로 송부하도록 함.

또한, 공익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신고자와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함(안 제10조 및 제26조).

Ⅲ. 검토의견

1. 공익신고 및 공익신고자 보호·지원 제도 개관

□ 현행법은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6조의 공익신고 기관에 공익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공익신고를 한 사람과 협조행위를 한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이 법의 목적으로 하고 있음.

○ 공익신고의 대상이 되는 공익침해행위¹⁾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 부과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행위로서, 별표에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등 6가지 분야와 관련된 497개의 법률을 규정하고 있음.

□ 법 제6조는 공익신고자가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기관으로, ① 공익침해행위자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②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이하 “조사기관”), ③ 수사기관, ④ 국민권익위원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은 ⑤ 국회의원과 ⑥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공단체에도 공익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1)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나.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현행법령의 공익신고 기관>

관련 법령	공익신고 기관
법 제6조제1호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법 제6조제2호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법 제6조제3호	수사기관
법 제6조제4호	국민권익위원회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	국회의원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의 공공단체

□ 공익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공익침해행위의 내용 등을 적은 문서와 함께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공익신고 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는데²⁾, 온라인(청렴포털³⁾), 방문, 우편, 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함.

○ 한편, 공익신고는 비실명 형태로도 가능한데, 공익신고자는 자신의 인적

-
- 2)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공익신고의 방법) ① 공익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신고서”라 한다)와 함께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3. 공익침해행위 내용
 4.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口述)로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구술신고를 받은 자는 신고서에 공익신고자가 말한 사항을 적은 후 공익신고자에게 읽어 들려주고 공익신고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도록 하여야 한다.
- 3) ‘청렴포털(clean.go.kr)’은 반부패 정책업무 및 부패·공익신고부터 보호·보상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기반 범정부 반부패 시스템으로, 국민들은 국민권익위원회·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청·주요 공공기관 등 1,200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온라인 신고가 가능하며, 각급 기관은 공공기관 청렴포털을 통해 반부패 신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음.

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로 하여금 공익신고서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음. 비실명 대리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하여야 하며, 변호사가 제출한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봉인하여 보관하고 신고자 본인 동의 없이 열람이 불가함⁴⁾.

□ 권익위에 공익침해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조사·수사가 필요한 경우 조사·수사기관에 이첩·송부하고, 조사·수사기관으로부터 결과를 통보받아 신고자에게 그 요지를 통지하여야 함⁵⁾.

○ 조사·수사기관이 공익침해행위 신고를 접수하면 조사 및 수사를 실시하여 그 조사·수사결과를 직접 신고자에게 통지하고⁶⁾, 국회의원 및 공공

4)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의2(비실명 대리신고) ①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로 하여금 공익신고서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변호사의 인적사항으로 갈음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익신고는 위원회에 하여야 하며, 공익신고자 또는 공익신고서를 대리하는 변호사는 그 취지를 밝히고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공익신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위임장을 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봉인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공익신고자 본인의 동의 없이 이를 열람해서는 아니 된다.

5)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9조(위원회의 공익신고 처리) ① 위원회가 공익신고를 받은 때에는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공익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의 특징에 필요한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공익신고자가 신고내용의 특징에 필요한 사항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공익신고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공익신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사실 확인을 마친 후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이하 이 조, 제10조 및 제11조에서 “조사기관등”이라 한다)에 이첩 또는 송부하고,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가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결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조사·수사 종료 후 조사결과 또는 수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조사결과 또는 수사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그 요지를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공익침해행위의 확산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0조제4항에 따라 해당 조사기관이 조사결과에 따라 취한 필요한 조치 외에 관계 법령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조치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 3.(생략)

⑦ ~ ⑨ (생략)

단체에 접수된 공익신고는 조사·수사기관 또는 권익위에 보내야 하며 이후에는 위의 절차에 따라 처리됨.

- 권익위는 2025년에 공익신고 6,922건을 접수하여 전년 대비 51.8% 증가하였고, 권익위 외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직유관단체 등 공공기관이 2024년 직접 접수한 공익신고는 12,278,167건으로 전년 대비 65.4% 증가하였으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국민권익위원회 접수·처리 건수>

(단위: 건)

분 야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접수	처리	접수	처리	접수	처리	접수	처리	접수	처리
계	4,531	4,782	3,266	3,262	3,005	3,031	4,561	4,361	6,922	6,625
건강	1,637	1,893	657	648	561	570	641	560	1,055	1,040
안전	413	414	215	234	202	192	1,060	1,044	913	861
환경	155	158	334	323	99	112	308	285	260	258
소비자 이익	391	400	452	438	326	345	429	379	1,175	1,029
공정한 경쟁	252	242	84	91	75	76	74	72	147	134
이에 준하는 공익	83	75	63	67	83	82	159	134	404	361
일반신고*	1,600	1600	1,461	1,461	1,659	1,654	1,890	1,887	2,968	2,942

* 일반신고는 공익침해행위 대상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신고이거나, 신고요건을 미비한 신고로 권익위에 정식 신고로 접수되지 않고 종결처리됨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6)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0조(조사기관등의 공익신고 처리) ① 조사기관등이 제6조에 따라 공익신고를 받거나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공익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수사를 하여야 한다.
- ② 조사기관등은 공익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 또는 수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고 끝낼 수 있다.
1. ~ 7. (생략)
 - ③ 조사기관등은 제2항에 따라 조사 또는 수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하거나 조사 또는 수사를 중단하고 끝낸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조사기관등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를 끝냈을 때에는 조사 또는 수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⑤ · ⑥ (생략)

<공공기관 접수·처리 건수(권익위 제외)>

(단위: 건)

분 야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접수	처리	접수	처리	접수	처리	접수	처리
계	5,417,879	5,321,804	5,646,520	5,763,824	7,423,171	7,413,589	12,278,167	12,654,876
건강	83,889	81,822	75,196	73,460	87,127	87,283	171,433	173,161
안전	4,572,517	4,476,871	4,755,186	4,905,916	6,255,490	6,216,674	10,138,783	10,417,594
환경	107,367	99,622	91,631	87,074	185,814	260,895	439,185	641,733
소비자 이익	272,762	254,637	340,847	308,743	503,417	477,053	887,653	831,641
공정한 경쟁	18,436	15,507	25,745	19,705	41,596	32,122	126,472	97,698
이에 준하는 공익	362,908	393,345	357,915	368,926	349,727	229,562	514,641	493,049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공익침해행위의 발생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신고자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보호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 최근 5년간 공익신고자 또는 협조자가 보호를 요구한 사건의 접수·처리 현황은 다음과 같음. 비밀보장의무 위반 확인 신청(제12조), 신변보호요구(제13조), 책임감면 신청(제14조), 보호조치 신청(제17조),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제22조)을 포함한 내역으로, 2025년에는 613건을 접수하여 전년 대비 122.1% 증가하였음.

<최근 5년간 공익신고 보호사건 접수·처리 건수>

(단위: 건)

연도	접수 건수	처리건수				
		계	인용	기각	각하	종결*
2021	169	126	27	25	10	64
2022	157	137	27	18	16	76
2023	186	229	19	27	30	153
2024	276	277	17	31	23	206
2025	620	524	46	32	22	424

* 「공익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권익위 예규) 제3조의2에 따라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공개요구에 해당하는 경우, 공익신고 방법을 따르지 않아 처리되지 않은 경우, 공익신고 종결사유에 해당하여 조사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고 끝낸 경우, 신고자보호업무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없이 종결처리함.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공익신고자 주요 보호제도에 대해 살펴보면, 법 제12조는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⁷⁾의 동의 없이 신고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보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한편, 권익위는 그 경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⁸⁾하고 있음.

7)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공익신고자등”이란 공익신고자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을 말한다.

8)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①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신고자등이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이 공개 또는 보도되었을 때에는 그 경위를 확인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경위를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한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사람의 징계권자에게 그 사람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징계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3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 또한, 「공익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은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등에서 인적사항 등이 공개·보도된 경우에는 권익 위에 비밀보장의무 위반 확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⁹⁾하고 있음.

□ 법 제13조는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동거인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권익위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권익위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¹⁰⁾하고 있음.

□ 법 제14조는 공익신고 또는 협조행위와 관련하여 신고 등을 한 사람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¹¹⁾, 「공익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은 공익신고자등이

처한다.

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

9) 「공익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제4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의무 위반 확인 신청의 접수 등)

① 신고자보호과장은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소송 등의 절차에서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거나 공개 또는 보도되었다고 위원회에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의무 위반 확인을 신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의무 위반 확인신청서(이하 "확인신청서"라 한다)에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의무 위반 확인을 신청한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인적사항, 신청사유 및 신청내용 등을 기재한 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 ⑧ (생 략)

10)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3조(신변보호조치) ①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신변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신변보호조치"라 한다)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변보호조치를 요청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신변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1)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책임의 감면 등) ①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 ⑧ (생 략)

권익위에 이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¹²⁾하고 있음.

- 법 제15조¹³⁾는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2조는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증거자료의 수집 등 공익신고의 준비 행위 포함)에는 위원회에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¹⁴⁾하고 있음.

<현행법상 불이익조치 유형>

법 제2조제6호	불이익조치 유형
가목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나목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다목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라목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 12) 「공익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제22조(책임감면 신청 등) ① 신고자보호과장은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명백하여 법 제14조에 따른 책임의 감면 등을 위원회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책임감면 신청서에 책임감면을 신청한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인적사항, 신청사유 및 신청내용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② ~ ④ (생략)

- 13)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5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 14)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2조(불이익조치 금지 신청) ① 공익신고자등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증거자료의 수집 등 공익신고의 준비 행위를 포함한다)에는 위원회에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을 받은 때에는 바로 공익신고자등이 받을 우려가 있는 불이익조치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③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에 관하여는 제18조, 제19조 및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위원회는 조사 결과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불이익조치를 하려는 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하지 말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법 제2조제6호	불이익조치 유형
마목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와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바목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사목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監査)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아목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자목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解止),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 법 제17조는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증거자료의 수집 등 공익신고를 준비하다가 불이익조치를 받은 후 공익 신고를 한 경우 포함) 권익위에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¹⁵⁾하고, 권익위의 조사 결과 신청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상회복 조치, 차별 지급되거나 체불된 보수 지급 등의 보호조치결정을 하여야 함. 최근 5년간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처리 현황은 다음과 같음.

15)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7조(보호조치 신청) ① 공익신고자등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증거자료의 수집 등 공익신고를 준비하다가 불이익조치를 받은 후 공익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위원회에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보호조치는 불이익조치가 있었던 날(불이익조치가 계속된 경우에는 그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자등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1년 이내에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국외에서의 보호조치 요구는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③ · ④ (생략)

<최근 5년간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처리 현황>

(단위: 건)

연도	접수건수	처리건수				
		계	인용	기각	각하	종결
2021	79	63	9	12	9	33
2022	90	63	10	10	15	28
2023	83	109	1	17	29	62
2024	119	128	1	22	21	84
2025	337	286	19	19	22	226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또한,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신고자에 대한 보상·포상제도를 두고 있는데, 공익침해행위 신고로 인하여 공익 증진에 기여하거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 신고자에게 금전적 대가를 지급하는 것으로, 공익침해행위 신고에 대한 국민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는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음.

□ 먼저, 보상금의 경우, 법 제26조는 내부 공익신고자의 공익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해당 신고자가 권익위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권익위는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¹⁶⁾.

16)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보상금) ① 내부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최근 5년간 공익신고 보상금 신청·처리 건수>

(단위: 건)

연도	신청건수	처리건수			
		계	지급	기각	종결*
2021	322	297	138	14	145
2022	281	269	99	32	138
2023	252	251	45	27	179
2024	290	320	55	49	216
2025	838	797	33	23	741

* 「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권익위 예규) 제9조에 따라 공익신고 미해당, 법률관계 미확정 건 등 보상금 지급 신청이 명백히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 심의 없이 종결처리함.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다음으로, 포상제도와 관련하여서는 법 제26조의3에서 공익신고로 인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권익위가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포상금 지급기준, 지급대상,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¹⁷⁾.

1. 벌칙 또는 통고처분
 2.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3.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4. 과징금(인허가 등의 취소·정지 처분 등을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가 있는 경우에 인허가 등의 취소·정지 처분 등을 포함한다)의 부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이나 판결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26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침해행위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할 의무를 가진 자 또는 공직자가 자기 직무 또는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공익신고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은 공공기관의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3년 이내, 그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 ⑤ ~ ⑦ (생략)

- 공익신고 보상금과 포상금의 목적은 공익신고로 인해 공익신고자가 입을 수 있는 신분상·경제상 불이익을 보전하고 공익신고를 장려·활성화하기 위한 금전적 인센티브¹⁸⁾라는 측면에서 유사하나, 지급 사유, 지급 대상, 신청 주체 등에 있어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음.

<공익신고 보상금과 포상금 비교>

구분	공익신고 보상금	공익신고 포상금
지급 사유	국가·지자체 등 공공기관 수입증대에 기여한 경우	국가·지자체 등 공공기관의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공익증진에 기여한 경우
지급 대상	내부 신고자	신고자, 협조자
지급 신청(추천) 주체	내부 신고자	신청받지 않음 (기관추천 또는 권익위 직권)
지급액 산정기준	▪ (상한) 없음 ▪ (하한) 30만원	▪ (상한) 5억원 ▪ (하한) 없음
대표 사례	폐수 무단방류를 신고한 사건에 대해 보상금(3억6천만원) 지급	보이스피싱 범죄 신고자에게 포상금(5천만원) 지급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이 외에도, 법 제27조는 공익신고자 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17)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의3(포상금 등) ① 위원회는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상훈법」 등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

1. 공익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 등이 있는 경우
2. 시정명령 등 특정한 행위나 금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3. 공익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준, 지급대상,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8) 국민권익위원회, 「2023년 공익신고자 보호법 조문별 해설서」, p.120

신고로 인해 치료비, 이사비용, 쟁송비용 등을 지출한 경우와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손실액 등에 대해 구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¹⁹⁾하고 있음.

19)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7조(구조금) ①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육체적·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2. 전직·파견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비용
3.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한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4.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5.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제2조제6호아목 및 자목은 제외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조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은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 지급할 수 있다.

③ ~ ⑤ (생략)

2. 전체 공익신고 기관을 통한 보호·지원 신청 허용

- 개정안은 공익신고를 접수받은 기관이 신고자에게 보호·지원 신청 절차를 안내하고, 신고자가 보호·지원 신청을 요청하는 경우 신청서를 접수하여 권익위로 송부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7항 및 제8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조사기관등의 공익신고 처리) ① ~ ⑥ (생략) <u><신설></u>	제10조(조사기관등의 공익신고 처리)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6조에 따라 공익신고를 접수받은 기관은 신고자에게 제12조·제13조·제15조·제22조에 따른 보호조치 및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에 따른 보상금·포상금·구조금의 신청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u><신설></u>	⑧ 제6조에 따라 공익신고를 접수받은 기관은 제7항에 따른 안내 시 신고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보호조치 또는 보상금 등의 신청을 요청하는 경우, 그 신청서를 접수하여 지체없이 국민권익위원회로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직접 신청한 것으로 본다.

□ 현행법은 공익신고자가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기관으로, ① 공익침해행위자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② 조사기관, ③ 수사기관, ④ 권익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은 ⑤ 국회의원과 ⑥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공단체에도 공익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²⁰⁾.

○ 또한, 권익위, 조사기관 등의 공익신고 기관이 공익신고를 접수하거나 조치 결과를 통지하는 등 공익신고를 접수·처리하는 과정에서 공익 신고자에게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²¹⁾.

20)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공익신고)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

1.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2.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
3. 수사기관
4. 위원회
5. 그 밖에 공익신고를 하는 것이 공익침해행위의 발생이나 그로 인한 피해의 확대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5조(공익신고 기관 등) ① 법 제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국회의원
2.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의 공공단체

21)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9조의2(보호·지원 안내) ① 제6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와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의 공공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안내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제12조에 따른 비밀보장에 관한 사항
2. 제13조에 따른 신분보호조치 요구에 관한 사항
3. 제16조에 따른 인사조치 요구에 관한 사항
4. 제17조에 따른 보호조치 신청에 관한 사항
5. 제22조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에 관한 사항
6. 제26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 신청에 관한 사항
7. 제26조의3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8. 제27조에 따른 구조금 지급 신청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안내 대상,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11조의4(보호·지원 안내) ①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보호·지원 안내 대상자는 공익신고자등으로 한다. 다만, 법 제9조의2제1항제2호 및 제8호의 경우에는 안내 대상자에 공익신고자등의 친족 또는 동거인을 포함한다.

② 조사기관등, 위원회 및 제5조제1항제2호의 공공단체(이하 이 조에서 “공익신고기관”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에 제1항에 따른 안내 대상자에게 법 제9조의2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안내해

□ 한편,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공익침해 행위의 발생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신고자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보호제도를 마련하고 있고, 공익신고자의 신분상, 경제상 불이익을 보전하고 공익신고를 장려하기 위하여 신고자에 대한 보상·포상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는 모두 권익위에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최근 5년간 공익신고 처리 건수 및 보호·보상 건수를 비교해보면, 공익신고 처리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보호조치 인용 건수와 보상금 지급 건수는 전체 신고 처리 대비 저조한 실정임.

○ 특히, 2023년과 2024년에는 각각 1건의 보호조치만 이루어졌는데, 같은 기간 공익신고 처리 건수가 500~800여만 건을 상회하는 것을 고

야 한다.

1. 조사기관등: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가. 법 제8조에 따른 공익신고를 접수한 때

나.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조치를 취한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할 때

다.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관할 조사기관등에 이송한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할 때

2. 위원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가. 법 제8조에 따른 공익신고를 접수한 때

나.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조사기관등에 이첩 또는 송부한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할 때

다. 법 제9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조사기관등의 조사·수사 결과의 요지를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거나 같은 조 제9항 후단에 따라 공익신고자에게 조사기관등의 재조사·재수사 결과의 요지를 통지할 때

라.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신청한 사람에게 법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라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청취하거나 진술서의 제출을 요구할 때

3. 제5조제1항제2호의 공공단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가. 법 제8조에 따른 공익신고를 접수한 때

나. 제5조제3항에 따라 조치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할 때

③ 삭제

④ 공익신고기관은 제2항에 따른 안내를 하는 경우에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해야 한다. 다만, 안내 대상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전화로 안내할 수 있다.

⑤ 공익신고기관은 법 제9조의2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려하면, 신고자에게 보호조치가 적용되는 비율이 상당히 낮음을 알 수 있음.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도 마찬가지로 매년 증가하는 공익신고 처리에 대비하여 오히려 감소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33건의 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공익신고 처리 건수 및 보호·보상 건수>

(단위: 건)

연도	공익신고 처리 건수	보호조치 건수		보상금 지급건수
		접수	인용	
2021	316만 건	79건	9건	138건
2022	342만 건	89건	10건	99건
2023	531만 건	83건	1건	45건
2024	821만 건	119건	1건	55건
2025	-*	337건	19건	33건

* 2025년 공공기관 공익신고 접수·처리 현황은 2026년 상반기 실태조사로 파악 예정

※ 전체 처리 건수 중 종결 및 기타조치 건수를 제외한 수치임.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국회입법조사처, 김형진, ‘공익신고자의 이중 부담 - 신고자에게 절차적 부담 전가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보상 절차 개편 필요성’, 「이슈와 논점」(제2458호), 2026.1.5.

- 국회입법조사처의 보고서에 따르면, 보호·보상 건수가 적은 데에는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으나, 그 일차적인 원인은 공익신고자에게 절차적 부담을 주는 ‘이중 절차 구조’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함. 신고자는 수사기관이나 조사기관 등 공익신고 기관에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이후, 보호나 보상을 받으려면 권익위에 별도의 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러한 이중 절차 구조가 신고자의 절차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신고자 보호 측면에서도 취약점을 보인다는 것임²²⁾.

22) 국회입법조사처, 김형진, ‘공익신고자의 이중 부담 - 신고자에게 절차적 부담 전가하는 공익신고자 보

□ 이에 개정안은 공익신고 기관이 신고 접수 단계에서 보호·지원 신청 절차를 안내하고, 신고자가 신청을 원하는 경우 이를 접수하여 즉시 권익위로 송부하도록 함으로써 신고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구조 하에서는 신고자에게 추가적인 시간과 노력을 요구하고 복잡한 절차로 인해 보호·지원 신청 의욕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행정절차를 일원화하면 공익신고자가 절차적·심리적 부담 없이 보호·지원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어 공익신고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함.

○ 또한, 현재는 정당한 보호·지원이 누락될 가능성이 있는데, 보호·지원 제도에 익숙하지 않거나 심리적 압박·보복 위험 등으로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운 경우 별도 기관에 추가적인 절차를 밟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임. 이에 공익신고 기관이 신고 접수 단계에서부터 안내하고 신청을 받을 경우 법에 보장된 보호·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신고자의 권익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함.

□ 다만, 개정안 심사 시에는 다음의 사항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먼저, 공익신고 기관이 공익신고를 접수한 때 보호·지원 제도에 관한 안내를 실시하는 것과 관련하여,

○ 현행법 제9조의2에서 이미 공익신고자 보호·지원에 관한 안내방안을 마

호·보상 절차 개편 필요성, 「이슈와 논점」(제2458호), 2026.1.5.

련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권익위는 공공기관에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²³⁾’을 배포하고 있음.

다만, 현행 규정은 안내의 주체로 ‘제6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와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의 공공단체’를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제6조의 모든 접수 기관으로 확대 적용하고 있음.

법 제9조의2 신설 당시 권익위에만 안내 의무를 부여하였으나, 이후 안내 주체를 대표자 또는 사용자와 국회의원을 제외한 공익신고 기관으로 확대하였음. 이는 제6조에 따른 모든 공익신고 기관으로 확대할 경우 안내 방안을 마련·시행하여야 하는 대상자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법 집행의 실효성이 낮을 수 있어 조사·수사기관, 권익위, 공공단체로 조정하였음²⁴⁾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이 외에 인용 조문과 관련하여, 개정안은 공익신고자의 신청이 필요한 보호·지원 절차 안내를 위한 것인데, 신청 규정이 아닌 의무 규정과 신청을 받지 않는 제도까지 인용하고 있음. 제12조의 공익신고자 등의 비밀보장 의무, 제15조의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는 공익신고와 동시에 취득하는 방어적 권리이므로 신청을 요하지 않으며, 제26조의3의 포상금²⁵⁾은 보상금과 달리 신고 접수 기관의 추천 또는 권익위의 직권

23)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참고자료) 참조(p.33)

24) 제407회국회 제2차 정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회의록, 2023.6.29., p.8

25)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의3(포상금 등) ① 위원회는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상훈법」 등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

으로 지급 대상을 선정하도록 규정되어 신청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보호조치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도 제17조에 따른 보호조치 신청을 누락하고 있으며, 보상금·포상금·구조금의 신청 절차에 대한 조문을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로 인용함으로써 보상금 등의 신청과 무관한 조항들(제26조의2(보상금의 산정기준), 제27조의2(자료요청 등), 제28조(보상금 등의 중복 지급 금지 등))을 인용 조항으로 포함하고 있음.

- 따라서 개정안의 취지에 맞게, ‘제13조·제17조·제22조에 따른 신변 보호조치·보호조치·불이익조치 금지의 신청 및 제26조·제27조에 따른 보상금·구조금의 신청’으로 수정이 필요함²⁶⁾.

-
1. 공익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 등이 있는 경우
 2. 시정명령 등 특정한 행위나 금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3. 공익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준, 지급대상,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5조의3(포상금의 지급기준 등) ③ 위원회는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자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자 중에서 법 제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조에 해당하는 자 또는 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위원회의 직권으로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한다.

- 26) 다만, 「공익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에서 비밀보장의무 위반 확인(법 제12조)과 책임감면(법 제14조)에 대해 각각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신청 근거가 없음.

<개정안의 인용 조문>

구 분			내 용
보 호	제12조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보도하여서 는 아니 됨.
	제13조	신변보호조치	<u>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u> 은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u>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u>
	제15조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 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됨.
	제22조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	<u>공익신고자등</u> 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u>위원회에 불이익조치 금 지를 신청할 수 있음.</u>
지 원	제26조	보상금	<u>내부 공익신고자</u> 는 공익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 <u>위원회에 보상금의 지 급을 신청할 수 있음.</u>
	제26조 의2	보상금의 산정기준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 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의 100분의 3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함.
	제26조 의3	포상금 등	위원회는 공익신고등으로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포상 을 추천할 수 있음.
	제27조	구조금	<u>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u> 은 공익신고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u>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u>
	제27조 의2	자료요청 등	피해원인제공자의 손해배상금 지급능력을 조사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음.
	제28조	보상금 등의 중복 지급 금지 등	이 법에 따라 보상금, 포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등을 청구할 수 있음.

□ 다음으로, 전체 공익신고 기관에 보호·지원 신청을 허용하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신청 시기·접수기관의 역할 명확화 및 표준 접수·이송 절차 마련의 필요성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개정안은 공익신고를 접수받은 기관은 신고자에게 보호·지원 신청 절차를 안내하고, 이 때 신고자가 보호조치나 보상 등의 신청을 요청하는 경우 접수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문언상 신고 직후 모든 보호·지원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음.

그런데 보호조치 신청²⁷⁾은 공익신고를 준비하다가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 불이익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 신청할 수 있고, 보상금²⁸⁾은 공익신고로 인하여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 신청이 가능함. 따라서 개정문의 “제7항에 따른 안내 시”를

27)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7조(보호조치 신청) ① 공익신고자등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증거자료의 수집 등 공익신고를 준비하다가 불이익조치를 받은 후 공익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위원회에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보호조치는 불이익조치가 있었던 날(불이익조치가 계속된 경우에는 그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자등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1년 이내에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국외에서의 보호조치 요구는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28)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보상금) ① 내부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벌칙 또는 통고처분
2.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3.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4. 과징금(인허가 등의 취소·정지 처분 등을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가 있는 경우에 인허가 등의 취소·정지 처분 등을 포함한다)의 부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이나 판결

삭제하는 등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둘째, 개정안의 제안이유는 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신고자의 권익 보장을 위하여 공익신고 접수기관에서 보호·지원 신청을 받아 권익위로 전달하려는 취지인데, 개정문은 ‘송부’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단순히 보호·지원 신청을 이송하는 것이 아닌 접수기관이 판단하여 이첩 또는 송부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음. 따라서 권한이 없는 기관이 접수한 것을 관할 기관으로 전달한다는 의미인 ‘이송’으로 수정이 필요함²⁹⁾.
- 현행법령은 공익신고에 대해 조사·수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권익위가 이를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으로 ‘이첩’할 수 있도록 하고, 공익신고를 받은 사항이 이첩 또는 종결 처리 대상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로서 조사기관등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이를 ‘송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³⁰⁾.

29) 현행법 제10조제6항은 조사기관등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공익신고를 접수하였거나 이송, 이첩 또는 송부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조사기관등에 이송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하여, 권한 없는 기관에 접수된 것을 관할 기관에 보내는 것을 “이송”으로 규정하고 있음.

30)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9조(위원회의 공익신고 처리) ①·② (생략)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사실 확인을 마친 후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이하 이 조, 제10조 및 제11조에서 “조사기관등”이라 한다)에 이첩 또는 송부하고,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가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 ⑨ (생략)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9조(공익신고의 이첩) ① 위원회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조사기관등에 공익신고를 이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야 한다.

1.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사기관

2. 범죄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

②·③ (생략)

제10조(공익신고의 송부) ① 위원회는 공익신고를 받은 사항이 이첩 또는 종결 처리의 대상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로서 조사기관등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이를 조사기관등에 송부할 수 있다. ② (생략)

○ 셋째, 공익신고 접수기관에서 신청서를 접수·이송하는 창구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라면, 이 과정에서 기관별 접수·이송 절차가 일관되지 않거나 이송 지연·누락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표준 절차 마련 등 행정적 뒷받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현행법령은 권익위가 보호조치신청과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하고³¹⁾, 보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³²⁾, 청렴포털 내 신청 이송 기능 마련³³⁾ 등 접수기관이 지체 없이 이송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음.

□ 권익위는 신고자가 공공기관에 보호조치나 보상금 등을 신청할 경우 오히려 공공기관의 접수·검토, 송부하는 과정에서 소요된 기간만큼 위원회 처리 절차가 지연될 우려가 있으며, 보호조치나 보상금 등 신

31)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16조(보호조치결정 등) ① 위원회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결정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호조치 권고(이하 "보호조치결정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8조(불이익조치 금지)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32)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보상금) ① ~ ③ (생략)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⑤ ~ ⑦ (생략)

33) 다만, 공익신고는 다양한 접수 창구를 통해 접수되고 있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접수 경로별 공익신고 접수 통계는 파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 청렴포털 이용 비중은 알 수 없으므로 다양한 방안 마련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청사건을 송부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대구광역시교육청은 보상 조치 권한이 없는 공익신고 접수기관에 과도한 절차적 책임을 부과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3. 공익신고로 인한 공공기관 수입 회복 등의 사실을 권익위에 통보

- 개정안은 공익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발생하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권익위에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7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6조(보상금) ① ~ ⑥ (생략) <u><신설></u> <u>⑦</u> (생략)	제26조(보상금) ① ~ ⑥ (현행과 같음) <u>⑦ 공공기관의 장은 공익신고로 인하여 해당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발생하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u> <u>⑧</u> (현행 제7항과 같음)

- 현행법 제26조제1항³⁴⁾은 내부 공익신고자³⁵⁾의 공익신고로 인한 과태

34)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보상금) ① 내부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벌칙 또는 통고처분
2.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3.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4. 과징금(인허가 등의 취소·정지 처분 등을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가 있는 경우에 인허가 등의 취소·

료,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통해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해당 신고자가 권익위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공익신고자가 내부 정보인 수입 회복 사실을 알기 어렵고 그 당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 등에 대한 법률관계의 확정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이로 인해 보상금 지급신청 기한³⁶⁾을 놓치거나 보상금 지급 신청을 했으나 법률관계 미확정을 이유로 각하 처리되는 사례³⁷⁾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개정안은 공익신고로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등이 있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그 사실을 권익위에 통보³⁸⁾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공공의

정지 처분 등을 포함한다)의 부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이나 판결

35)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6. (생략)

7. “내부 공익신고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신고자를 말한다.

가. 피신고자인 공공기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기업, 법인, 단체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

나.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과 공사·용역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6)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보상금) ③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은 공공기관의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3년 이내, 그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7) 2014년 인천 요양병원 원무과장이 병원장의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30여억원 환수처분 등을 이끌어 내었고 이에 따라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국민권익위원회는 신청인이 보상금을 신청하자 ‘법률관계 미확정’을 이유로 종결하였고, 이후 재신청하자 ‘신청기한 경과’를 사유로 보상금 지급 기각 결정을 하였음(‘21.9.7. SBS뉴스 “공익신고로 30억 넘게 환수...보상금은 못 줘”).

38) 제안이유에는 공공기관의 장이 신고자와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한다고 하였으나, 개정문에는 국민권익위원회만 명시되어 있음.

수입 회복 사실에 관한 통지를 제도화하고 공익신고자 보상금 신청의 어려움을 경감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의 사항을 함께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 첫째, 보상금 지급은 신고자의 신청이 전제되므로 수입 회복 사실에 대한 통지를 받은 권익위는 이를 신고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또한, 조사기관등은 권익위로부터 공익신고를 이첩·송부받은 경우 권익위에 그 결과를 통보하고, 직접 접수한 경우 신고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고 있으므로, 수입 회복 등의 통지도 이와 마찬가지로 공공기관이 직접 접수하여 처리한 공익신고에 대해서는 직접 신고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관련하여, 권익위가 마련하여 공공기관에 배포하고 있는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표준안’에는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이 직접 접수(이송 포함)하여 처리한 공익신고로 인하여 수입의 회복 등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³⁹⁾⁴⁰⁾.

39)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표준안」 제30조(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이 직접 접수하거나 다른 공익신고기관으로부터 이송 받아 처리한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내부 공익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내부 공익신고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지할 수 있다.

40) 다만, 동 표준안은 각 기관의 자체 규정 제·개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실제 이에 따라 통지하

○ 둘째,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장에게 공공기관의 수입 증대나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 통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행정처분의 확정, 판결의 확정, 불복기간 경과 등 확정의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통보 시점 판단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또한, 법률관계 확정 시점과 공공기관에서 알게 된 시점 사이에 시차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바, 통보 시점의 명확성을 고려하여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권익위는 신고자가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수입 회복 등의 사실을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나, 위원회가 공공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사실을 신고자에 통지하고, 공공기관이 직접 접수하여 처리한 공익신고에 대해서는 직접 통지하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대구광역시교육청은 공익신고가 접수되어 절차에 따른 수입회복 및 증대 과정에 상당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 수입회복 및 증대의 의미가 포괄적인 점을 고려할 때 접수기관에 그 결과를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107

고 있는 사례는 파악하지 않고 있음.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공익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보호·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 공익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공개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는 신변보호조치를 권익위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동거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권익위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는 사용자 등에게 인사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등의 사용자 또는 인사권자는 공익신고자등이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 공익신고자는 보호조치를 권익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등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에는 권익위에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는 불이익조치 금지를 권익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등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권익위에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는 책임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등은 신고와 관련한 형사, 징계 및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면받을 수 있고, 신고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공익신고자 보상제도

구 분	지급 대상자	지 급 요 건
보상금	내부 공익신고자*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100만원 초과하는 벌금, 과징금 등) * 권익위 의무 지급
포상금	공익신고자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 권익위 재량
구조금	공익신고자 및 협조자, 그 친족 또는 동거인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치료, 이사, 쟁송, 임금손실 등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 권익위 의무 지급

*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과 공사·용역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 등

※ 각급기관에서 지급받은 보·포상금이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보상금 지급 기준보다 적을 경우 권익위에 보상금 차액 지급 신청 가능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의 알려드립니다
 > 보호제도 안내 또는 보상·포상제도 안내' 메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